

□ 病院稅務相談 □

상답 : 柳 泰 鉉 (公認會計士 · 대양회계법인)

[質疑] 相續에 따른 法律的인 留意事項과 共同相續에 따른 課稅處分內容을 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경기도 인천직할시 H 病院)

[問 1] 民法上 包括的遺贈이란 무엇인지요?

[問 2] 相續의 開始意味는 어떠한지요?

[問 3] 財産相續人과 財産相續의 順位는?

[問 4] 法定相續分의 按分比率의 內容은?

[問 5] 指定相續分과 遺留分制度란 무엇인지요?

[問 6] 相續의 單純承認, 限定承認, 拋棄란?

[問 7] 相續開始日로부터 3個月內에 相續拋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共同相續人이 協議分割함으로써 相續人中 자기의 法定相續分을 超過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課稅處分은?

[答 1] 民法 第1005條 本文은 『재산상속인은 相續開始된 때로부터 被相續人(사망자)의 재산에 대해 包括的 權利義務를 承繼한다』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2) 즉 순전한 財産上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被相續人의 신분을 전제로한 財産上의 權利義務도 承繼 하는 것이므로 被相續人이 은행에 대한 債務를 부담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積極的財産 有無에 관계없이 그의 消極財産(債務)이 相續人에게 상속되므로 銀行等 債權자를 그 財産相續人에게 債務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3) 또한 死亡者가 유언으로써 특정인에게 包括的 遺贈을 한 경우는 그 包括受遺者가 그 債務도 承繼하나 特定受贈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[答 2] 1) 民法 997條는 相續을 死亡에 의해 開始됨을 定하고 있으므로 自然的死亡時는 현실로 사

망한 때이고 사망신고를 한 때가 아닙니다.

2) 判例에 의하면 相續開始있음을 안 날로부터 라는 意味는, 상속인이 「사망사실」만 알고 法律不知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는 相續開始있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으며, 遠距離에 있는 상속인은 전보 등으로 被相續人의 死亡事實을 안 때, 失蹤宣告에 의하여 사망으로 보는 때는 失蹤宣告確定時가 아니라 失蹤宣告期間이 滿了한 때 입니다.

[答 3] 法律上 相續人이 되는 資格者와 그 順位는 다음과 같으며 이때 胎兒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- (1) 第1順位: 被相續人의 直系卑屬과 妻
- (2) 第2順位: 被相續人의 直系尊屬과 妻
- (3) 第3順位: 被相續人의 兄弟姊妹
- (4) 第4順位: 被相續人의 8寸以內의 傍系血族
- (5) 相續人이 없을時는 國家에 歸屬한다.

[答 4] 改正民法(1979. 1. 1 시행)은 재산상속등에 있어서 男女의 差別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.

即, 長男: 1.5, 妻: 1.5, 長男以外의 아들: 1, 딸: 1, 出嫁한 딸: 0.25의 比重值로 相續分을 갖게 됨.

改正民法上의 法定相續分의 비율의 實例를 들어 圖示하면 다음 表와 같습니다.

[答 5] 1) 「指定相續分」이라 함은 共同相續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遺言에 의한 指定으로 정하여지는 상속분으로 法定相續分에 우선합니다.

2) 改正前 民法은 遺言自由의 原則을 채택하여 全財産을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生活能力이 없거나, 財産形成에 함께 참여한 가족의 입장에서 不合理한 점이 있었습니다.

改正民法의 法定相續分比率表

(戶主(父)가 死亡한 경우)
의 第1順位 相續關係

被相續人	第1順位法定相續人の 法定相續分과 그 比率			
(1) 戶主(父)	長 男		妻	
	1.5-③ $\frac{1}{2}$		1.5-③ $\frac{1}{2}$	
(2) 戶主(父)	長 男		長 女	妻
	1.5-③ $\frac{3}{8}$		1-② $\frac{2}{8}$	1.5-③ $\frac{3}{8}$
	長 男		長女(出嫁)	2 男
(3) 戶主(父)	1.5-⑥ $\frac{6}{17}$		0.25-① $\frac{1}{17}$	1-④ $\frac{4}{17}$
	長 男		2 女	妻
	1.5-⑥ $\frac{6}{17}$		1-④ $\frac{4}{17}$	1.5-⑥ $\frac{6}{17}$
(4) 戶主(父)	長 男		長女(出嫁)	2 男
	1.5-⑥ $\frac{6}{21}$		0.25-① $\frac{1}{21}$	1-④ $\frac{4}{21}$
	長 男		2 男	妻
	1.5-⑥ $\frac{6}{21}$		1-④ $\frac{4}{21}$	1.5-⑥ $\frac{6}{21}$
(5) 戶主(父)	長 男		3 男	長 女
	1.5-③ $\frac{3}{9}$		1-② $\frac{2}{9}$	1-② $\frac{2}{9}$

따라서「遺留分制度」를 두어 「배우자와 자녀」에
게는 法定相續分의 2分の 1, 직계존속과 형제자
매에게는 法定相續分의 3分の 1을 유언과 관계없
이 相續할 수 있게한 制度입니다.

[答 6] 1) 相續에 의한 權利義務의 承繼는 당연
히 발생하나, 相續人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로
부터 3月內에 「單純承認」 「限定承認」 「拋棄」中
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
2) ① 單純承認: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無制限
으로 承繼할 것으로 승인하는 상속인의 意思表示
이며,

② 限定承認: 상속받은 財産의 한도에서 피상속
인의 채무를 변제할것을 留保하고 상속을 승인하
는 相續人의 의사표시입니다.

③ 拋棄: 상속의 效果를 확정적으로 거부하는
의사표시입니다. (相續拋棄書式: 별지참조) 그러므
로 財産相續人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
하려면 相續開始 있음을 안 때로부터 3個月內에
家庭法院에 상속포기의 신고 또는 限定承認의 申
告를 해야합니다.

[答 7] [財産1264-1281. 1984. 12. 3]의 회시
내용은 다음내용과 같이 과세처분하고 있습니다.

〈回 示〉

現行民法 제10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財
産相續人은 相續開始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內에

포기를 할 수 있으며, 同法 제1041조의 규정에 의
하여 財産相續人이 相續을 포기할 때에는 同法 제
1019조 제 1항의 기간(3월)內에 法院에 포기 신
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財産相續人
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共同相續人이 相續
財産을 民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協議分割
함에 있어 相續人중 자기의 法定 相續持分을 초과
하여 相續財産을 取得한 경우에는 이를 贈與로 보
아 贈與稅가 課稅되는 것임.

財産相續人 相續拋棄申告書

財産相續人相續拋棄申告書

本 籍
住 所
申告人 × ○ ○
西紀 年 月 日生

本 籍
最後住所
被相續人 A ○ ○
西紀 年 月 日生

1. 申告人은 被相續人 A ○ ○의 次男입니다.
2. 申告人은 被相續人이 西紀 年 月 日 死
亡하였으므로 申告人에게 相續의 開始가 있음을
즉시 알았으나 申告人은 다른 相續人과는 달리
相續人으로부터 최고 학부까지의 教育費를 받아
大學을 卒業하였고 申告人이 結婚할 때에는 집
한 채를 새로 지어 받았으므로 相續을 拋棄하고
申告人의 相續分을 다른 相續人에게 相續시키고
자 하여 이에 申告하는 바입니다.

添 付 書 類

1. 戶籍謄本 1通
2. 除籍謄本 1通
3. 納 付 書 1通

西紀 年 月 日
위申告人 × ○ ○ 印

○ ○ 家庭法院 貴中

*